## 전임 및 내부위촉사정관 연수에 관한 규정

제 정 2012. 4. 개 정 2014. 6.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잠재력있는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전임 및 내부위촉사정관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여 입학사정관으로서의 전문성을 확보함은 물론 자질을 함양하고자 한다.

제2조 (연수의 범위) 연수란 내부.외부연수 및 대학에서 실시되는 워크숍, 세미나, 컨퍼런스 등을 포함한다.

제3조 (목표) 이 규정은 입학사정관의 윤리성, 책무성 확보 및 공정하며 신뢰성있는 운영을 꾀함으로서 고교교육의 정상화 및 사교육비 절감에 앞장서고자 한다.

제4조 (적용) 이 규정은 본교의 모든 입학사정관에게 적용된다.

제5조 (연수시수) 이 규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연수에 참여한다.

- 1. 전임, 전환, 교수사정관은 내부연수 30시간 이상 및 외부연수 10시간 이상 참여한다. 단, 전임입학사정관은 외부연수 40시간 이상으로 한다.
- 2. 내부.외부위촉사정관은 내부연수 30시간 이상 참여하며 경우에 따라 외부연수에도 참가할 수 있다.

제6조 (내부연수의 주요내용) 이 규정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내부연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1. 윤리성, 책무성 강화를 위한 연수
- 2. 전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연수
- 3. 입학사정관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
- 4. 사정관 자질 함양을 위한 실습 연수
- 5. 기타 입학사정관제 운영에 필요한 연수

제7조 (연수 예외사항) 교수, 내부, 외부위촉사정관 중 전학년도에 이어 연속적으로 임명된 입학사정관 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지침에 의거하여 제5조에 규정된 연수시수를 1/2 시수만 이수하여도 된다.

제8조 (기타)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연수에 관한 내용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지침 및 일반적 관례에 따른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내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